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,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(매 학년 190일 이상)을 따르도록 함.(안 제45조제3항)
- 나. 학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.(안 제47조제2항)
- 다.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,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는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7조제4항)
- 라. 학교의 학기, 수업일수 등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,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정함.(안 제44조 내지 제4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 예정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2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임시공휴일(이하 “임시공휴일”이라 한다.)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업일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46조 본문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47조제3항(중전의 제2항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7조제4항 전단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수 있다”를 “수 있으며,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는 학교 행사 외에도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4조(학기) ① <u>법 제24조제3항</u> 의	제44조(학기) ① <u>법 제24조제4항</u> --			
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	-----			
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	-----			
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	-----			
업일수 ·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	-----			
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	-----			
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	-----			
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	-----			
월말일까지로 한다.	-----.	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	
제45조(수업일수) ① <u>법 제24조제</u>	제45조(수업일수) ① <u>법 제24조제</u>			
<u>3항</u> 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	<u>4항</u> -----			
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	-----			
의 장이 정한다. 다만, 학교의	-----.			
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	-----			
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	-----			
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	-----			
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	-----			
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	-----			
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	-----			
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	-----			
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	-----			
다.	--.		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	

② (생 략)

<신 설>

제46조(학급편성)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,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47조(휴업일 등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임시공휴일(이하 “임시공휴일”이라 한다.)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업일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46조(학급편성) 법 제24조제4항

-----.

-----.

제47조(휴업일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을 휴업

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③ <u>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.</u> 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·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미리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,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⑤ (생략)	<u>일로 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.</u> ③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<삭 제></u> ④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수 있으며,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<u>임시공휴일에는 학교 행사 외에도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.</u>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95